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3
----------	-----

발의연월일 : 2007. 4.

발 의 자 : 김을태 의원외 6인

□ 개정이유

- 1997년 자동차관리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자동차 폐차업의 공급과잉으로 폐차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바,
- 이에 따라 폐차업자의 사업장 시설기준을 확대함으로써 폐차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동차폐차업시설기준을 강화(안 별표2)
 - 작업장·야적장·사무실 등의 총면적으로서의 대지면적을 3천 m²이상에서 4천5백m²이상으로 변경함.
- 타 시·도 등록 폐차업자의 폐차영업소 협의(안 제5조)
 - 군수·구청장은 과당경쟁 방지 및 폐차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내 등록업체의 실태를 감안하여 협의함

□ 참고사항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구청장·군수는”을 “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폐차업의 등록기준) ①자동차폐차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2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사업장의 위치는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이어야 한다.
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군수·구청장은 폐차영업소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폐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폐차영업소 설치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관내 등록업체의 실태를 감안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인용법령 띄어쓰기와 낫표(「」)표기 : 신·구조문대비표 생략》

제1조 본문 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각각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자동차폐차업시설기준(제5조 관련)

구		분	확보기준
대지(작업장·야적장·사무실등의 총면적을 말한다)			4천5백m ² 이상
장	구난차(견인능력 3톤이상)		1대 이상
	지게차(인양능력 3.5톤이상)		1대 이상
	중량기(계량능력 20톤이상)		1식 이상
비	압축기(투입용적 10m ² 이상)		압축기, 파쇄기, 전단기, 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파쇄기(가압능력 500HP이상, 생산능력 매시간당 5톤 이상)		
	전단기(전단능력 800톤이상, 처리능력 매시간당 15톤 이상)		
	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이상)		

주 : 환경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 자동차폐차업시설기준 (제5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구 분</th> <th style="width: 70%;">확보기준</th> </tr> </thead> <tbody> <tr> <td>대지(작업장·야적장·사무실등의 총면적을 말한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u>3천m²이상</u></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장</td> <td>구난차 (견인능력 3톤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대 이상</td> </tr> <tr> <td>지게차 (인양능력 3.5톤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대 이상</td> </tr> <tr> <td>중량기 (계량능력 20톤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식 이상</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비</td> <td>압축기 (투입용적 10m²이상)</td>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압축기,파쇄기, 전단기,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td> </tr> <tr> <td>파쇄기(가압능력 500HP이상, 생산능력 매시간당 5톤 이상)</td> </tr> <tr> <td>전단기(전단능력 800톤이상, 처리능력 매시간당 15톤이상)</td> </tr> <tr> <td>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td> </tr> </tbody> </table>	구 분	확보기준	대지(작업장·야적장·사무실등의 총면적을 말한다)	<u>3천m²이상</u>	장	구난차 (견인능력 3톤이상)	1대 이상	지게차 (인양능력 3.5톤이상)	1대 이상	중량기 (계량능력 20톤이상)	1식 이상	비	압축기 (투입용적 10m ² 이상)	압축기,파쇄기, 전단기,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파쇄기(가압능력 500HP이상, 생산능력 매시간당 5톤 이상)	전단기(전단능력 800톤이상, 처리능력 매시간당 15톤이상)	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	<p>[별표 2] 자동차폐차업시설기준(제5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0%;">구 분</th> <th style="width: 70%;">확보기준</th> </tr> </thead> <tbody> <tr> <td>대지(작업장·야적장·사무실등의 총면적을 말한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u>4천5백m²이상</u></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장</td> <td>구난차 (견인능력 3톤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대 이상</td> </tr> <tr> <td>지게차 (인양능력 3.5톤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대 이상</td> </tr> <tr> <td>중량기 (계량능력 20톤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식 이상</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비</td> <td>압축기 (투입용적 10m²이상)</td>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압축기,파쇄기, 전단기,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td> </tr> <tr> <td>파쇄기 (가압능력 500HP이상, 생산능력 매시간당 5톤 이상)</td> </tr> <tr> <td>전단기 (전단능력 800톤이상, 처리능력 매시간당 15톤 이상)</td> </tr> <tr> <td>용해로 (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td> </tr> </tbody> </table>	구 분	확보기준	대지(작업장·야적장·사무실등의 총면적을 말한다)	<u>4천5백m²이상</u>	장	구난차 (견인능력 3톤이상)	1대 이상	지게차 (인양능력 3.5톤이상)	1대 이상	중량기 (계량능력 20톤이상)	1식 이상	비	압축기 (투입용적 10m ² 이상)	압축기,파쇄기, 전단기,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파쇄기 (가압능력 500HP이상, 생산능력 매시간당 5톤 이상)	전단기 (전단능력 800톤이상, 처리능력 매시간당 15톤 이상)	용해로 (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
구 분	확보기준																																		
대지(작업장·야적장·사무실등의 총면적을 말한다)	<u>3천m²이상</u>																																		
장	구난차 (견인능력 3톤이상)	1대 이상																																	
	지게차 (인양능력 3.5톤이상)	1대 이상																																	
	중량기 (계량능력 20톤이상)	1식 이상																																	
비	압축기 (투입용적 10m ² 이상)	압축기,파쇄기, 전단기,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파쇄기(가압능력 500HP이상, 생산능력 매시간당 5톤 이상)																																		
	전단기(전단능력 800톤이상, 처리능력 매시간당 15톤이상)																																		
	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																																		
구 분	확보기준																																		
대지(작업장·야적장·사무실등의 총면적을 말한다)	<u>4천5백m²이상</u>																																		
장	구난차 (견인능력 3톤이상)	1대 이상																																	
	지게차 (인양능력 3.5톤이상)	1대 이상																																	
	중량기 (계량능력 20톤이상)	1식 이상																																	
비	압축기 (투입용적 10m ² 이상)	압축기,파쇄기, 전단기,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파쇄기 (가압능력 500HP이상, 생산능력 매시간당 5톤 이상)																																		
	전단기 (전단능력 800톤이상, 처리능력 매시간당 15톤 이상)																																		
	용해로 (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12조, 제140조○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전문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 계 법 령

□ 자동차관리법

第53條(自動車管理事業의 登錄등) ①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9.4.15>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교통·환경오염·주변여건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9.4.15>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1조(등록신청등)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1.4.19, 2003.1.2, 2004.11.29, 2005.9.16, 2006.8.7>

1. 삭제 <2003.1.2>
 2. 사업장(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차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자동차매매업을 제외한다)
 5. 삭제 <2006.8.7>
 6.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내용이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등이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자동차매매업인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비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증사본 및 취업승낙서(자동차정비업인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기간은 12월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붙인 조건의 이행을 위한 경우
 2.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인가·허가·심의등이 지연되는 경우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별책 5의<%생략:부록5%>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
3. 사업장의 소재지
4. 사업장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
5. 기계·기구명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한한다)

제112조(변경등록) ①자동차관리사업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과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등의 신고를 한 대표자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31>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②제111조(제2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31>

- 제140조(폐차영업소의 설치) ①폐차업자가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뢰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이하 "폐차영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28의 자동차폐차영업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다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구역에 폐차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 ③제111조(제1항제1호·제5호를 제외한다) 및 제112조의 규정은 폐차영업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2.19>

[별표 28]

자동차폐차영업소시설기준(제140조제1항관련)

구 분		확 보 기 준
대지(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300㎡이상
장 비	중량기(계량능력 10톤이상)	1식이상
	고철운반용자동차(최대적재량 2톤이상)	1대이상
	지게차(인양능력 3.5톤이상)	1대이상

주 : 폐차영업소에서는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으며,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 수집에 전용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 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등록에 적용한다.

제3조(매매업의 등록기준) ①자동차 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면적 660제곱미터이상의 자동차전시용시설과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3-03-31>
2. 사업장이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과 관련하여 매매업자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2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이하“보증금”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19>

②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빙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19>

③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매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하여 1년이 경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재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1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으로 하자에 대하여 배상을 한 때에는 배상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금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19>

제4조(정비업의 등록기준) ①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1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이상 또는 자동차정비·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인 이상의(자동차부분정비업은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차체수리에 관한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을 말한다)의 정비요원을 두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 정비에 관한 산업기사이상 또는 자동차정비·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②구청장·군수는 섬(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자동차등록대수 및 정비능력과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기계 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신고기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폐차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폐차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2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이어야 한다.
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1999-11-22 조례 제3391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등록기준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1-19 조례 제3555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보증금 예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등록된 기존의 매매업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부터 6월이내에 이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2003-03-31 조례 제3665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등록기준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등록신청사항은 종전의 등록기준에 의한다. 단,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등록기준을 적용하고, 매매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 (제4조 관련)

구 분		업 종 별	자동차중 합정비업	소형자동 차정비업	자동차부 분정비업	원동기전 문정비업
사업장 면적(m ²)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의 총면적		1천이상	400이상	70이상	300이상
시설 및 장비	1. 검사시설 (핏트 또는 리프트) 2. 체인부록 (1톤 이상) 3. 도장작업시설 (스프레이건 포함) 4.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 ○ ○ ○	○ ○ ○	○ ○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	1. 제동시험기 2. 전조등시험기 3. 사이드슬립측정기 4. 속도계시험기 5. 일산화탄소측정기 6. 탄화수소측정기 7. 매연측정기		○ ○ ○ ○ ○ ○ ○	○ ○ ○ ○ ○ ○ ○	 ○ ○ ○	 ○ ○ ○ ○
시험기 및 측정기	1. 연료분사펌프시험기 2. 노즐시험기 3. 압력측정기 4. 회전반경측정기 5. 휠밸런서 6. 토인측정기 7. 캠버캐스터측정기 8. 전자식엔진종합시험기		○ ○ ○ ○ ○ ○ ○	○ ○ ○ ○ ○ ○	 ○ 	○ ○ ○
공작기계	1. 실린더보링머신 2. 실린더호우닝머신 3. 벨트시트그라인더 4. 벨브시트커터 5. 크랭크연마기					○ ○ ○ ○ ○

주 :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 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 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 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2]

자동차폐차업시설기준 (제5조 관련)

구		분	확보기준
대지 (작업장·야적장·사무실등의 총면적을 말한다)			3천 m ² 이상
장	구난차 (견인능력 3톤이상)		1대 이상
	지게차 (인양능력 3.5톤이상)		1대 이상
	중량기 (계량능력 20톤이상)		1식 이상
	압축기 (투입용적 10m ² 이상)		압축기, 파쇄기, 전단기, 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비	파쇄기 (가압능력 500HP이상, 생산능력 매시간당 5톤 이상)		
	전단기 (전단능력 800톤이상, 처리능력 매시간당 15톤 이상)		
	용해로 (용해능력 1회당 5톤이상)		

주 : 환경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